Gas Cabinet(Manual)설치 공사 계약서

- (주) 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이 용 한 (이하 " 갑" 이라 칭함) 과
- (주)아토 이엔지 대표이사 박 강 식 (이하 "을"이라 칭함) 간에 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- 다

음 -

제 1조 : (공 사 명)

Gas Cabinet (CH4, CHF3용 Manual type) Utility배관 공사

제 2조 : (계약 금액)

일금 : 일천사백만 원정(14,000,000) <VAT별도>

제 3조 : (대금 지급 방법)

1) 납품 설치 완료 후 전액 일괄 결재

* 지급 조건은 (주)아이피에스 규정에 의 한다.

제 4조 : (공사 현장 및 납기)

- 1) "을"은 "갑"이 지정하는 장소 (주) 아이피에스 공장 내에서 설치 공사를 하며 Gas Cabinet 제작은 ㈜ 아토 이엔지에서 한다.
- 2) "을"은 계약 체결일 을 발주일 로 해서 "갑"이 요구하는 기일이내에 설치 완료하며 "갑"은 동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.
 - (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" 갑 " 과 " 을 " 의합의 하에 공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(자재.인건비)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 하에 정산한다)
- 3) 제작.운반.설치작업 중 발생된 불량에 대해서는 "을"이 책임지고 재제작 또는 수리한다.(뒤틀림, 용접불량, 표면상처, 가공불량 등)
- 4) 공사 일정은 " 갑"의 요구 일자에 맞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 협의 조정 한다.

제 5조 : (하자보증)

"을"은 배관 설치공사 완료 후부터 향후 1년 동안 품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.

단, "을"은 공사완료 후 정상적인 사용 시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.



제 6조 : (지체상금)

"을"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"갑"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,"갑"은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대금의 3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"을"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단 "갑"의 요구에 의해 일어나는 사양 변경에 따른 일정 지연에 의한 지체 상금 및 사전 협의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. (계약당시의 공사 범위보다 추가되거나 늘어날 경우도 제외한다.)

제 7조 : (손해배상)

- 1) 본 계약 체결 후 "갑"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 전액을 "을"의 착수금으로 인정한다.
- 2) "갑"의 구두 발주에 의해 "을"이 장비류를 우선 발주 하였을 경우 장비와 관련 된(Regulator, Filter, Tube, Fitting 등) 제반 비용은 "갑"이 지불한다.
- 3) "을"이 공사 중 천재 지변이 아닌 실수에 의해 일어나는 사항으로 인해 "갑"에게 입힌 손해는 "을"이 배상 한다.

제 8조 : (소유권 이전)

- 1) "갑"은 위의 약정 대금을 완불 하였을 때 위 제품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 하는 것으로 한다.
- 2) "갑"은 위의 약정 대금을 완불 할 때 까지는 "을'의 서면에 의한 협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,대여, 질권 설정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다.
- 3)" 갑"의 위의 약정 금액을 완불 하기 전에 주소를 변경하거나, "을" 회사에서 공급 받은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 할 때는 사전에 "을"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 9조 : (계약해제)

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"갑" 또는 "을"의 통고로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.

- 1) 공사대금이 약정 기일을 경과 한 후에도 입금되지 않을 때
- 2) 이 계약서 상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"갑" 또는 "을"이 위배 할 때
- 3) "갑" 의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, 파산,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, 가처분, 압류, 경매,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체납 처분을 받게 된 때

제 10조 : (합의사항)

- 1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준한다.
- 2)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" 갑"과 " 을 의 상호 서명 날인 후 한 통 씩 보관한다.

제 12조 : (공사 완료 후 제출자료)

- 1) 을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.
 - 공사완료 보고서
 - 공사관련 도면
 - 기타 공사에 관련된 자료
- 2) 상기 사항 중 "을" 보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001 년 04 월 13일

" 갑 " 주 소 :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질>>>

상 호 : (주) 아이피에스 전화 번호: (031) 659 -2000

대표자: 이 용

"을"주 소: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72 (시화아파트형 공장 224호)

상 호 : (주) 아 토 **연화** 전화번호 : (031) 432-3614

대표자: 박 강